

이중언어과정운영규정

2026.07.24. 제정

<학사관리팀>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학칙」 제6조 및 제18조의2에 근거하여, 동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가 운영하는 이중언어과정의 개설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이중언어과정”이란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담당교원의 강의를 통역 제공방식(한국어 강의-외국어 통역 제공)으로 운영하는 과정을 말한다.
2. “이중언어강좌”란 이중언어과정에 편성되어 제1호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교과목을 말한다.

제3조(과정의 개설) ① 이중언어과정은 외국인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학과(부)의 신청을 받아 교무처장의 승인으로 개설한다.

② 이중언어과정의 편성·개설 및 학사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4조(강좌 운영) ① 이중언어강좌는 제2조 제1호 방식 운영과 동일하며, 담당교원은 통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·진행하여야 한다.

② 담당교원은 학기 종료 후 강좌 운영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수업보조금) ① 본 대학교는 이중언어강좌를 담당하는 전임교원에게 수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수업보조금은 담당교원의 학기별 책임학점 기준을 초과하여 담당하는 이중언어강좌에 한정하여 지급한다. 다만, 학기별 책임학점은 이중언어강좌를 제외한 담당 교과목을 우선 적용한다.

③ 수업보조금은 학기별로 지급하되,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지급할 수 있다.

④ 수업보조금의 학점당 지급단가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⑤ 제1항의 수업보조금은 통역을 매개로 하는 이중언어강좌 운영에 따른 추가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, 「강의료규정」에 따른 초과강의료와 그 지급 목적을 달리한다. 이에 따라 같은 강좌에 대하여 「강의료규정」에 따른 초과강의료가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른 수업보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지급 절차) 수업보조금의 신청·심사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7조(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수업및학사운영규정」, 「강의료규정」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